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¹⁾,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²⁾에 따라 규약 및 기타 제규정을 최신화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는 규약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반영이 요구될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5.19.>

2)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결과 연맹은 규약 제정 및 개정에 있어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개정을 실시해야 하나 본회 종목육성팀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0**년도 [종목육성과-557(20**.**.**.)] 규약승인 이후 본회를 통해 어떠한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연맹에서 사용 중인 규약은 20**년도 *월에 제정과 20**년 2월, 20**년 *월 개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 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심의·의결과 본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규정에서 제정·개정일자가 본문의 일자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문제가 발견되는 등 규약 및 기타 제규정 관리가 부실한 것을 확인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회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20**년 이후 승인받지 못한 규약을 전면 개정하고 연맹에서 운영중에 있는 모든 규정을 재정비 하여 규약은 종목육성팀에 승인받아 기타 제규정과 함께 공정감사실에 보고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 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조직 운영,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맹 「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제규정으로 「회계규정」을 제정하여, 계약업무 및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해 경기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체육회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계약법」 및 기타 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한다.

연맹 「회계규정」 제73조(계약의 방법)¹⁾ 및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제1항²⁾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³⁾에 따라, 계약체결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 1) 제73조 (계약의 방법)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2)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⁴⁾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연맹 「회계규정」 제27조(증빙서류의 작성)⁵⁾에 의거, 연맹은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 등을 회계 증빙서류로 갖추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맹은 각종 보조금 집행 등 계약 및 회계 업무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이 2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연맹은 □□□□대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정가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훈련 기자재 용품을 구입하였으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범위와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4) 분할계약의 금지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제27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지출결의서

1.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서

1.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 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하며,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로 청구할 경우에는 각 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서를 영수증서로 본다.

2. 기밀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청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접대성 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으로 한다.

4. 기타 벽지·오지 등 특별한 지역에서의 사용이 부득이 할 경우 간이 계산서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

5. 외국인코치 및 국외전지훈련시 증빙은 개인간 무통장 입금 확인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청구서

1.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

1. 계약서의 청구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⑤ 기타 증빙서류

1.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령에 의거, 업체의 용품 판매 독점계약서, 구매계약서 등 각종 회계 증빙자료가 필요하나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나. 분할 계좌이체 부적정

연맹은 동일 사업 내 업체로부터 최대 *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하루 또는 며칠간 수차례에 나누어 거래 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등 타당한 근거없이 분할이체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분할계약으로 비취질 수 있는 등 회계처리의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및 회계 처리의 부적정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계약 및 회계 처리 미비 목록

연도	사업명	업체명	품목	지출일자	금액(원)	미비사항
2022	제104회 □□□□대회	A업체	운동용품	2023****	** , ** , 000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2. 판매 독점계약서 미첨부 3. 구매 계약서 미첨부 4. 분할 계좌이체
2022	제104회 □□□□대회	A업체	운동물품	2023****	** , ** , 000	
2021	제103회 □□□□대회	A업체	운동용품	2022****	** , ** , 000	
2021	제103회 □□□□대회	A업체	운동물품	2022****	* , ** , 000	
2021	제103회 □□□□대회	A업체	운동용품	2022****	* , ** , 000	
2020	제102회 □□□□대회	A업체	운동용품	2020****	** , ** , 000	
2020	■■■■■육성	A업체	운동용품	2020****	** , ** , 000	
2020	■■■■■육성	A업체	운동용품	2020****	* , ** , 000	

[관계기관 의견]

연맹은 전국동계체육대회 대비 훈련 기자재 구입을 위해 체육회에 공개입찰을 요청했으나, 유찰되었거나 계약업체의 납품기한 준수 등의 어려움으로 체육회 승인 하에 연맹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 계약을 진행했으며, 구입에 따른 분할 계좌이체는 연맹 계좌에 이체한도(*만원)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맹은 추후 이체한도를 높여 분할 계좌이체를 하지 않겠으며, 회계 증빙자료 보완 등을 통해 추후 회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회장은

연맹 「회계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계약 관련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매계약서 첨부, 수의 계약 체결조건 등을 확인하여 회계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고 회계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회계업무수행을 위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⁶⁾와 연맹 「회계규정」 제12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은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6)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체육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연맹은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에게 해당하는 회장과 사무국장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바이애슬론경기연맹회장은

직무관련 재산상 사고에 대비하여 연맹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